

#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의안번호 : 632
- 발의자 : 구미경 의원(찬성의원 53명)
- 발의일 : 2023년 03월 29일
- 회부일 : 2023년 04월 03일

### 2. 제안이유

- 서울시 청렴도 평가,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기관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자발적으로 조성·확산하는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에 청렴도 평가·조사 사업을 추가함(안 제6조제2호 신설).
- 나.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 다.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기관, 공직자에 대해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3 신설).  
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예방 청렴활동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  
(안 제23조제2항).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 행동강령」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1) 입법예고(2023.04.06 ~ 04.10.)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5. 검토의견

###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에 청렴도 평가·조사 사업을 추가하고(안 제6조제2호 신설), 청렴도 활성화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안 제6조의2 신설),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나 실적이 우수한 기관, 공직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는 근거(안 제6조의3 신설)를 마련하고, 일본어식 표현 순화, 해당 용어의 의미 이해에 필요하면 한자를 함께 쓰도록 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안 제10조제3항, 안 제27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조 문	주 요 내 용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에 청렴도 평가·조사를 신설(제2호 신설)
제6조의2(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신 설>	-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6조의2제1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개인정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청렴 포상 등) <신 설>	-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및 청렴문화 조성 등에 크게 기여, 활동 실적 우수한 서울시 소속 부서와 기관단체 및 공직자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제10조(위원회 구성)	- “1회에 한하여”는 일본어식 표현으로 “한 차례만”으로 순화(제10조제3항)
제17조(인센티브 부여) <삭 제>	- 청렴 포상 등 안 제6조의3 신설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조항 삭제
제23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 부패예방 청렴활동 참여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직내”를 삭제하고,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를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 공모 등”으로 수정(제23조제2항)
제27조(하정 청백리상 심사 위원회)	- 제3항 ‘호선’, 제5항 ‘개의’용어를 의미 이해에 필요한 한자를 병기하여 ‘호선(互選)’과 ‘개의(開議)’로 수정

- ※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31호로 제정 · 시행되었음.
- 이는 서울특별시 청렴도 평가와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기존에 법령 및 조례에 포상 근거 규정 없이 청렴문화 조성과 확산에 기여한 기관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포상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음.

## 나. 세부내용 검토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sup>1)</sup>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의2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를 수집·이용하도록(제2항)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u>&lt; 신 설 &gt;</u>	<u>제6조의2(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u> 시장은 <u>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u> <u>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u>

-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 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참조),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정신적, 경제적 손실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는바,
  -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시행(서울시 자체청렴도 측정 사업 <붙임 1> 참조)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최소한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 규정을 마련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총 21만 767건으로, 이는 전년도 17만 7,457건에 비해 약 18.8% 증가하였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22년 9월, 236면 참조). 이처럼 통계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의 활용과 이에 따른 보호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또한,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무려 7만건에 이르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가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보안뉴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고↑·조사인력↓, 2022년 10월 24일자 참고).
-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해서는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됨에도 조례에서 상위법령 내용을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정부조직법」, 직제, 개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업무를 개인정보 수집 없이는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하므로,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개별 법률에 수집·이용 대상 개인정보로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 2021.12., 507–508면 참조).

## 2) 청렴 포상 신설(안 제6조의3)

- 안 제6조의3은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및 청렴문화 조성기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 소속 부서와 기관, 단체, 공직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이는 서울시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을 장려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표창과 포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음.
  - ※ “포상금”은 일반적으로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 행정목적의 달성을 기여한 자 또는 어떤 일에 성과를 창출한 자에게 그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함.

현 행	개 정 안
<신설>	<u>제6조의3(청렴 포상 등)</u> 시장은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및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서울시 소속 부서와 기관·단체 및 공직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청렴 포상 규정 신설(안 제6조의3)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2023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시 “감사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포상금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며, 해당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목적에 맞는 비목으로 변경하거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2023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중〉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포상금(303-01)은 원칙적으로 법령, 조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의 포상금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7개 사업에서 8개의 포상금으로 2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이 중에서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시상(600만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700만원)’, ‘청렴활동 포상(240만원)’,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포상(1,290만원)’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포상이 아니라 계획 및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현행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바,
  -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포상금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며, 감사위원회는 해당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적에 맞는 비목으로 변경하거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감사위원회 포상금 편성 상세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과목	사업내역	예산액	법령·조례 등 근거
지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포상금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시상	6,000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 담당관-3118호)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포상금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금	12,000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포상금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	7,000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청렴의식 향상 및	포상금	하정청백리 포상	9,000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세부사업명	과목	사업내역	예산액	법령·조례 등 근거
청렴문화 확산		<u>청렴활동 포상</u>	2,400	관한 조례」 제24조, 제28조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포상금	<u>반부패 청렴우수사례 포상</u>	12,900	2021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안전감사 활동 강화	포상금	공무원 안전순찰 평가 포상	10,000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7조, 제56조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기타 보상금	공익제보 보상·포상금	220,000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2023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2022.11.29., 14-15면 재인용.

- 감사위원회는 반부패·청렴시책 내실화로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 구현, 시민불편·안전분야 집중 감사, 시민인권 증진, 투자·출연기관 비리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높은 법질서 의식이 요구됨에도 지금까지 청렴 장려를 위한 포상에 있어서 법령에 근거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였는바, 향후 감사위원회는 법령 근거를 마련한 후 사업을 수행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청렴·공직기강 관련 포상금 집행 현황(2018년~2022년) 〉

(단위 : 천원, '22.12.31.기준)

명 칭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지급내용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2018	6,000	6,000	- 최우수 : 1개 기관
	2019	6,000	6,000	- 우 수 : 3개 기관
	2020	6,000	6,000	- 장 려 : 4개 기관
	2021	6,000	6,000	- 최우수 : 1개 기관
	2022	6,000	6,000	- 우 수 : 4개 기관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지수 BSC)	2018	7,000	6,800	- 최우수 : 2개 기관
	2019	7,000	6,800	- 우 수 : 4개 기관
	2020	7,000	6,800	- 장 려 : 6개 기관
	2021	7,000	6,600	
	2022	7,000	7,000	
하정 청백리	2018	9,000	수상자 없음	수상자 없음
	2019	9,000	수상자 없음	수상자 없음

명 칭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지급내용
청렴활동 직원참여	2020	9,000	7,000	-대상 : 1명 -본상 : 1명
	2021	9,000	수상자 없음	수상자 없음
	2022	9,000	수상자 없음	수상자 없음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2018	3,600	1,085	- 부서별 청렴지수 평가 직원포상
	2019	3,600	2,776	- 청렴 사행시 공모 - OX 퀴즈 당첨자
	2020	3,600	2,543	- 청렴송 뮤직비디오 퀴즈 - OX 퀴즈 당첨자 - 청렴표어 공모 당선자
	2021	2,400	1,630	- 아이디어 공모 당선자 - OX 퀴즈 당첨자 - 자가진단 만점자
	2022	2,400	2,400	- 청렴 표어 - 영상 공모 당선자 - OX 퀴즈 당첨자
	2018	5,800	5,100	- 반부패 우수기관 · 최우수 : 1개 기관, 우수 : 4개 기관, 장려 : 5개 기관 - 청렴실천 우수직원 · 최우수 : 1명, 우수 : 2명, 장려 : 2명 ※ 투출기관 포상금 지급 제외
	2019	5,200	1,900	- 반부패 우수기관 · 우수 : 3개 기관, 장려 : 3개 기관 - 청렴실천 우수직원 · 우수 : 2명, 장려 : 4명 ※ 투출기관 포상금 지급 제외
	2020	6,900	3,900	- 반부패 우수기관 · 최우수 : 1개 기관, 우수 : 2개 기관, 장려 : 3개 기관 - 청렴실천 우수직원 · 최우수 : 1명, 우수 : 2명, 장려 : 3명 ※ 투출기관 포상금 지급 제외
	2021	6,900	2,000	- 반부패 우수기관 · 최우수 : 1개 기관, 우수 : 2개 기관, 장려 : 3개 기관 - 청렴실천 우수직원 · 최우수 : 1명, 우수 : 2명, 장려 : 3명 ※ 투출기관 포상금 지급 제외
	2022	6,900	600	- 반부패 우수기관 · 최우수 : 1개 기관, 우수 : 2개 기관, 장려 : 3개 기관 - 청렴실천 우수직원 · 최우수 : 1명, 우수 : 2명, 장려 : 3명 ※ 투출기관 포상금 지급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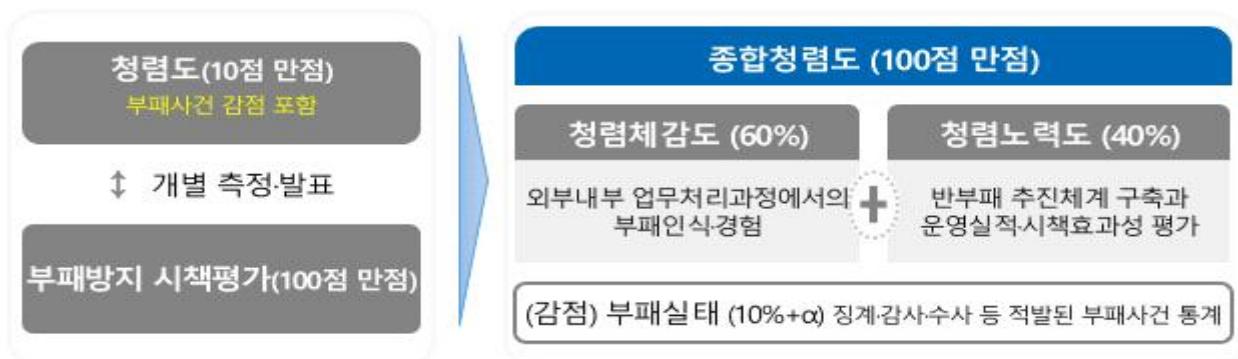
\* 감사위원회, 2023년 3월 29일 제출자료 재인용.

## 〈 2023년 청렴·공직기강 관련 포상금 예산 현황 〉

명 칭	개 요			포상목적	포상방법	포상대상
	평가내용(선정기준)	산출내역	집행시기			
공직기강 확립	①공직기강 확립 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②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③공직기강 점검 ④청백e-시스템 경보발생 적기 처리율	○ 총예산:6,000천 원 -최우수:2,000천 원*1개 -우수:1,000천 원*4개	연말 (12월 중)	공직기강 확립 유도	-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 유공공무원 사장표창	본청 및 산하 전기관(기관 및 공무원)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지수 BSC)	①청렴대책 수립, 업무추진비 공개 ②부서장 및 직원 청렴교육 이수, 집합교육 ③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④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반부패 우수사례 제출	○ 총예산:7,000천 원 -최우수:1,200천 원*2개 -우수:700천 원*4개 -장려:300천 원*6개	연말 (12월 중)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	-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본청 및 산하 전기관
하정 청백리	① 청렴 결백성, ② 헌신 봉사성, ③ 공사생활, ④ 시정기여도	○ 총예산:9,000천 원 -대상:5,000천 원*1개 -본상:2,000천 원*2개	12월 중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직풍토 기여	- 유공공무원 사장표창 및 포상금 지급	본청 및 자치구 공무원
청렴활동 직원참여	청렴 표어, 영상 공모 - 명확성, 독창성, 명료성 등	○ 총예산:440천 원 - 청렴 표어 · 최우수:100천 원×1명 · 우 수:50천 원×3명 · 장려:30천 원×6명 - 청렴 영상 · 응모(1명):10천 원	4~6월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 및 직원 청렴의식 고취	-기프티콘 지급	본청 및 산하 전 기관 직원
	청렴 OX 퀴즈 정답자 중 무작위 추첨	○ 총예산:1,960천 원 - 100명×19.6천 원	4~10월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① 반부패 우수사례(기관별) ② 청렴실천 우수사례(개인별)	○ 총예산:6,900천 원 - 반부패 우수기관 · 최우수:2,000천 원*1개 · 우수:1,000천 원*2개 · 장려:500천 원*3개 - 청렴실천 우수직원 · 최우수:500천 원*1명 · 우수:300천 원*2명 · 장려:100천 원*3명	11월 중	청렴문화 확산 및 공유 등	- 우수기관직원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본청 및 산하 전기관, 자치구 및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감사위원회, 2023년 3월 29일 제출자료 재인용.

- 다만,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및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상금 적용 범위가 모호한 것은 아닌지,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
- 한편, 감사위원회는 서울시의 청렴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표창과 포상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2021년에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에서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여 종합청렴도가 4등급이었고, 2022년에는 청렴노력도 2등급, 청렴체감도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상승하였으나,
  -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노력도’는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실적평가)하고, ‘청렴체감도’는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내부 직원 대상 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하는 것으로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청렴노력도(40%), 부패 실태 감점( $10\%+\alpha$ )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1. 참조.

-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내부 직원 대상 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1~5등급)가 서울시는 4등급으로 감사위원회는 민원인과 서울시 내부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구현을 위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3) 청렴활동 참여 기관 범위 확대(안 제23조제2항)

- 안 제23조제2항은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로 규정하여 서울시 조직내로 한정하였던 청렴활동 참여 기관의 범위를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생략) ② <u>조직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u> ----- -----, <u>반부패우수사례 발표회</u> <u>개최 등</u> ----- -----. ③ (생략)	제23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생략) ② <u>청렴문화 확산을 위해</u> ----- -----, <u>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모 등</u> ----- -----. ③ (생략)

- 참여 기관의 범위 확대를 위해 기존에는 서울시 조직안에서만 “반부패 우수사례 등의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서울시 조직 및 투자·출연기관, 자치구까지 확대하여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모 등의 절차를 통한 포상을 함으로써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청렴문화 확산 및 공유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까지 참여 기관을 확대하였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반부패·우수사례 공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감사위원회는 반부패·우수사례에 대한 공모 계획, 공모 심사절차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통해 참여기관들의 활발한

참여와 선정된 반부패·우수사례의 적극적인 공유와 홍보 등을 통해 청렴한 서울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4) 약칭 정리와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적용 등

-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를 약칭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서울특별시’ 약칭을 ‘서울시’로 정하여 용어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13조,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등) 동 조례의 법체계성 및 통일성을 위한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음.  
※ “약칭”이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말하고, 법령에서 “약칭”은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음(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 2021.12., 780면 참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u>서울특별시</u>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u>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 다)</u> ----- ----- -----.

- 다음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1회에 한하여”란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하고, 쉬운 말로 바꿀 경우 그 법적 의미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

하고, 해당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괄호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한 정비기준에 따라 “호선”과 “개의” 등의 용어에 한자를 괄호로 표기하도록 하여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음.

※ “일본어 투 표현”이란 일본어의 문장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적어 우리 어법과는 다른 문장 표현을 말하고, 이를 우리 문법에 따라 정비함.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 ③ -----, <u>1회에 한하여</u> <u>여</u> -----. --, ----- -----. --.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한 차례만</u> -----. --, ----- -----.
제27조(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 ① (생 략) ② ----- ----- <u>구성 한다.</u> ----- <u>서울특별시</u> ----- ----- -----. ③ ----- ----- <u>호선하며,</u> ----- ----- -----.	제27조(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 ① (생 략) ② ----- ----- <u>구성한다.</u> ----- <u>서울시</u> ----- -----. ③ ----- ----- <u>호선(互選)하며,</u> ----- ----- -----.
④ (생 략) ⑤ ----- <u>개의하고,</u> ----- ----.	④ (생 략) ⑤ ----- <u>개의(開議)하고,</u> ----- ----.
⑥ ~ ⑦ (생 략)	⑥ ~ ⑦ (생 략)

## **다. 종합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청렴활동 참여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23조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강조하고(안 제6조의2 신설), 기존에 조례에 근거 없이 지급하던 포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서울시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

## 붙임 1 서울시 자체청렴도 측정 개요

- 목 적 : 권의위 '청렴 체감도' 평가에 앞서 우리시 청렴도를 자체 측정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고 청렴도 향상방안 마련
- 예 산 : 총 40,000천원 (외부, 내부 각 20,000천원)
- 조사대상 : 시 직원 / 시 업무경험 민원인
- 조사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설문조사('23. 5~7월)
- 결과활용 : 측정결과 하위(4~5등급) 기관 공개, 자체개선 유도 및 교육
- 조사영역 : 기관 내·외부 업무수행 청렴도 전반

① (조직내부 운영) 조직문화,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

- ▶ 대상자 : 전 직원(본청 3급 이하, 사업소 4급 이하)
- ▶ 설문문항 : 소속기관의 청렴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객관식)
  -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등 업무청렴도, 업무지시 공정성 등
- ▶ 측정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서 이메일 설문 실시
- ▶ 근거 :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9조(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기관별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를 위탁 할 수 있다.

- ▶ 개인정보 제공 수준 : 직원 행정 이메일 주소 (성명 제외)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①3호, 제17조①2호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 제공 사항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징구

## ② (외부 업무)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업무 등 부패취약분야

- ▶ 대상자 : 부패취약분야 업무경험 상대방
  - 계약(공사 및 용역), 보조금 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보조 등), 민원
- ▶ 설문문항 : 부패인식 및 금품수수 등 부패경험 관련
  - 부정청탁, 금품수수·향응 및 편의 제공 사례, 부당한 업무처리 경험 등
- ▶ 측정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서 전화 설문 실시
- ▶ 근거 :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0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 ▶ 개인정보 제공 수준 : 업무경험 상대방업체명, 휴대폰 번호 (성명 제외)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①3호, 제17조①2호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 제15조제1항제2호 · 제3호 · 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 ·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 제공 사항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정구